

#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현황과 황해환경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작 성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윤성혜(shyun12@hotmail.com)

## 목 차

1. 황해 환경오염 현황
2.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
3. 황해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4. 정리 및 함의

-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등으로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양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 중국은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성장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야 관련 법제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파괴된 생태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 1982년 제정된 『해양환경보호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오염물배출총량제, 해역관리 제도, 감찰제도, 법률책임 등의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보호의 이념을 오염방지에서 생태보호로 전환하는 등 국내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한국과는 1993년 『한중환경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과학기술 등에 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황해환경개선을 위해 양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황해오염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물관리 기본지침 등의 구축이 요구

## 1. 황해 환경오염 현황

### 1) 한중 해양오염 현황

#### ■ 중국의 해양오염 사건

- 2002년 Tasman Sea(석유발동기선)의 보하이(渤海, 발해만) 기름유출 사건
- 2011년 10월 해상유전에서 잇단 원유 유출 사고 발생<sup>1)</sup>
  - 중국 최대 해상유전인 보하이만 평라이(蓬莱) 19-3 해상유전에 원유 누출, 주변 해역 840km<sup>2</sup> 오염

1) “중 보하이만서 또 기름유출사고”, 조선일보, 2012-06-06.

- 랴오닝성 수이중(绥中) 36-1 해상유전에서 제어기 고장으로 원유가 누출 돼 인근 해역 1km<sup>2</sup>오염

- 2012년 Maxima 창장(长江) 연료 누출사고
- 1973년부터 2014년까지 연해에서 발생한 선박 원유오염 사건이 3,200여 건, 유출량 4.3만 톤

## ■ 한국의 해양오염 사건

-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Hebei Spirit)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 충돌 기름 유출사고<sup>2)</sup>
  - 국내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
  - 약1.3만kl 원유가 태안 해역으로 유출
- 이란 유조선 산치(SANCHI)호 충돌 사고
  - 2018년 1월 6일 제주도 인근 동중국해에서 발생
  - 13만 6천 톤에 이르는 콘덴세이트 유와 선박 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중유 유출

## 2) 황해오염 문제 해결의 필요성

### ■ 황해오염 문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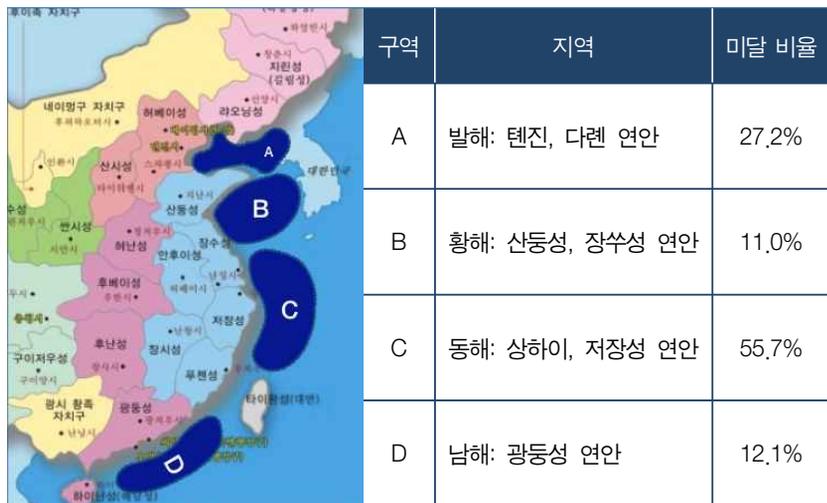
- 황해오염은 비단 해상에서의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뿐만 아니라 육상 폐기물, 해양에서 유입되는 생활폐수, 산업폐수 등 육상 기원 오염원에 원인이 있음<sup>3)</sup>

2) “태안 기름유출 피해 기름제거까지 7년 걸려... “생태계 회복 중”“, 뉴시스, 2018-06-21.

3) “详解《2017年中国海洋生态环境状况公报》”, 中国海洋报, 2018-04-03.

- 최근 황해오염이 급증한 것은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 규모가 지난 10년간 40% 이상 증가하여 중국 내 하역 및 근해 해역의 수질 오염에 기인<sup>4)</sup>
- 2016년 중국 근해 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표준치에 미달하는 수역의 비율이 26.6%로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sup>5)</sup>(〈그림 1〉참고)

그림 1 | 중국 근해 해역 수질



출처: 한국은행 데이터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 ■ 황해오염 문제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 황해는 한국, 중국, 북한이 공유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광역 생태계로 해안 주민 생계에도 매우 중요한 자원
- 해양오염은 해양 동식물과 철새를 포함하는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

4) 한국은행(2017), p.8.

5) 한국은행(2017), p.8.

- 해양오염 문제의 월경적 성격을 감안하여 황해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한중 양국은 법제수단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 중임
-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각자 최근까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황해환경 보호를 위해 양국의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등 협력메커니즘 마련이 필요

## 2.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

### 1) 중국 해양환경보호 법률법규 체계

#### ■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기본법률의 제정

- 중국 환경정책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72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전까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 인식이나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부족
- 1978년 헌법과 형법에 최초로 환경보호 규정을 삽입하고 1979년 《환경보호법(임시)(环境保护法(试行))》을 제정하여 정부행정부문과 사법기관의 환경문제 책임에 대해 규정
- 1983년 삼동시(三同时)제도<sup>6)</sup>와 오염물배출비(费)징수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당시로는 매우 선진적 환경관리제도 실시

6) 삼동시제도는 건설사업 시 환경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관리제도로 건설사업 시 오염방지 시설은 반드시 기본시설과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가동'을 일컫음.(환경보호법 제26조)

-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했는데, 오염원 대부분이 경제발전의 기인한 것으로 환경오염 유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함
- 1989년 환경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된 이후, 관련 법률의 지속적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통제에 대한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법제

- 중국은 1950, 60년대 들어 해양환경오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해양행정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규 및 규정이 제정됨
  - 어느 정도 해양환경 보호 작용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해양환경오염 방지 법규라 할 수 없음
- 1970년대 해상운송이 증가하고 해저 석유개발사업이 부흥하면서 해양석유오염이 중국 해양 오염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
  - 국무원은 1974년 연해 수역의 오염방지 상세규정을 담은 《연해수역오염방지임시규정(防止沿海水域污染暂行规定)》을 제정 및 실시
  - 197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임시) 제11조가 “강, 하천, 호수, 바다, 댐 등의 수역을 보호하고 수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고 규정하면서 해양환경보호법의 기반을 다짐
- 1980년대 해양환경보호 법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해양환경 보호 법률 제도체계 또한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
  - 예를 들어 1982년에 《해양환경보호법(海洋环境保护法)》과 《해양석유탐사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条例)》가 제정되었고, 1984년에는 《물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이 제정됨

## ■ 해양환경보호 법률법규의 체계

- 헌법상의 환경보호 원칙 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 환경 기본법인 환경보호법과 같이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해양환경보호 관련 법률
- 국무원이 헌법 및 법률제도에 따라 제정한 해양환경보호 행정법규 및 해양환경보호 부문 규장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해양환경보호 법규, 해양환경보호 지방성 규장
- 전인대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체결한 국제조약, 협약, 그리고 의정서

표 1 | 중국 해양환경 관련 법률법규 체계

	법규
법률	《해양환경보호법(海洋环境保护法)》, 《어업법(渔业法)》, 《야생동물관리보호법(野生动物保护法)》, 《해상교통안전법(海上交通安全法)》, 《해관법(海关法)》, 《해역사용관리법(海域使用管理法)》
행정법규	《해양석유탐사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条例)》, 《선박오염방지 관리조례(防治船舶污染海域管理条例)》, 《해양폐기물관리조례(海洋倾废管理条例)》, 《육지기원 오염물오염에 따른 해양환경피해방지관리조례(防治陆源污染物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
행정규장 및 표준	《해양석유탐사개발환경보호관리조례실시방법(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条例实施办法)》, 《선박안전관리감독규칙(船舶安全监督管理规则)》, 《선박의 내하수역환경오염방지관리규정(防治船舶污染内河水域环境管理规定)》, 《교통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방법(交通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办法)》, 《해수수역수질표준(海水水质标准)》, 《어업수질표준(渔业水质标准)》, 《해양석유개발산업의 기름함유오수배출 표준(海洋石油开发工业含油污水排放标准)》, 《선박오염물배출표준(船舶污染物排放标准)》, 《선박산업오염물배출표준(船舶工业污染物排放标准)》
지방법규	《저장성해안관리조례(江苏省海岸带管理条例)》, 《선전경제특구해역오염방지조례(深圳经济特区海域污染防治条例)》, 《칭다오시근해역환경보호규정(青岛市近岸海域环境保护规定)》, 《광둥어선항구관리조례(广东渔港管理条例)》
지방규장, 결정 및 명령	《텐진시해역환경보호관리방법(天津市海域环境保护管理办法)》, 《광저우 항구업무감독과 선박 쓰레기 및 오염 방지 관리방법(广州港务监督防止船舶垃圾污染管理办法)》
국제조약	《UN해양법협약(联合国海洋法公约)》, 《국제선박오염방지협약(国际防治船舶污染公约)》,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国际油污损害民事责任公约)》, 《대륙붕조약(大陆架公约)》,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런던협약(防止倾废物及其他物质污染海洋公约)》, 《생물다양성협약(生物多样性公约)》

출처: 저자작성

## 2) 중국 해양환경보호법(海洋环境保护法)

### ■ 해양환경 보호 관련 전문적 단행법률

- 1982년에 제정되어 1999년, 2017년 두 차례 개정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이 ‘오염방지’에서 ‘생태보호’로 전환되면서 해양생태 보호가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됨<sup>7)</sup>
-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전문적 단행법률로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조정한 법률로 해양오염 배출총량제도, 해역관리제도, 감시·감독 제도 및 법률책임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1999년 개정의 주요 내용

- 국무원 및 기타 관련 부문, 연해 각급(级) 정부의 책임 귀속에 대해 규정
- 해양자연보호구역, 해양특별보호구역 등 해양생태보호 제도 및 조치에 관한 규정
- 법률수단을 통한 해양생태 보호 침해자에 대한 처벌 방식 규정
- 1999년 개정은 주요 관리제도가 법률제도로 향상됐고, 국가 차원의 오염배출총량 통제제도가 제정되었음

### ■ 2017년 개정의 주요 내용

- 2017년 해양환경법 개정으로 해양환경의 이념이 생태환경 보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이념의 변화는 각 관련 제도에서도 구현됨

7) 白佳玉·隋佳欣(2018), p.75.

- 해양생태체계 관리 시스템 개혁: 해양의 영역에 최초로 생태보호 한계선(red line) 제도를 확립하고 해양생태환경보호의 기본제도로 규정함
- 행정처벌 상한제도 폐지: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제도를 보다 강화함
  - 20년 가까이 존재해오던 30만 위안(元)의 행정처벌 상한선 폐지
  - 해양환경오염 사고 유발 기업에 대해 직접손실의 30%를 벌금액으로 확정(제91조)
  - 해양환경오염 사고의 엄중 정도에 따라 벌금 등급 구분(제90조): 일반적이거나 비교적 큰 경우, 사고의 직접손실의 20%, 중대하거나 특별히 큰 경우 30%
  - 이와 더불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해서 기업의 전년도 수입액의 50% 이하의 벌금 구형
- 심사비준제도 개혁: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허가'가 핵심이었던 국가 권력형 관리모델에서 '감독'이 주가 되는 관리모델로 전환<sup>8)</sup>
  - 행정허가 사항 중 선박의 오염위험성 액체 운반 업무 비준 사항을 제외하고 선박 업무에 관한 심사 비준 항목 삭제(제70조)
  - 심사비준과정을 최적화하고(제47조), 해양업무와 관련된 부문의 선박 및 관련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제70조)

### 3) 중국 해양환경 관리제도

#### ■ 해역관리제도

- 중국은 해양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해양생태보호한계선(生态保护红线制度)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제3조)

8) 이는 전형적인 '放管服'의 형태. 즉, 정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정부의 기능을 서비스화 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임.

- 해양생태보호한계선 제도는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2011년 《환경보호 중점업무에 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加强环境保护重点工作的意见)》에서 처음으로 국가 정책성 문건의 형태로 등장
  - 2014년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개정으로 본 제도가 법률형식으로 확정되고, 2017년 해양환경보호법 개정 시 법률조항으로 삽입
- 생태기능한계선은 ‘중점해양생태기능구’, ‘생태환경민감구’, ‘생태환경취약구’에 중점을 두고 각 생태환경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중점해양생태기능구는 경제발전과정에 있어 해양자원의 개발과 생태보호 간의 모순을 해결하여 국가 해양생태 안전과 사회경제발전의 생태보호안전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
    - 해양특별보호구, 중점 빈하이(滨海)습지, 특수보호 섬, 자연풍관 및 역사문화 유산, 진귀하고 멸종위기종 집중분포 지역, 중요 어업수역 등이 포함됨<sup>9)</sup>
  - 생태환경민감구/취약구: 남색생태보호벽을 구축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양생태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선
    - 해안대자연해안선, 맹그로브, 중요 하구, 중요 모래해안선, 모래사장보호 해역, 산호 및 해초대 등 포함<sup>10)</sup>

## ■ 오염물 배출총량제

- 해양환경보호법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중점해역에 대해 오염물 배출총량제를 실시
-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부하량을 결정하여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

9) 黄华梅 外(2017), p.175.

10) 黄华梅 外(2017), p.175.

- 총량규제 실시 대상 오염물질, 해역 범위, 규제항목, 규제방법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름

## ■ 감시감독제도

- 중국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은 2011년 《해양감찰제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实施海洋督察制度的若干意见)》을 공포하고 해양감찰제도를 실시
- 해양감찰제도는 해양환경보호법 이행을 감찰하는 제도로 상급(级) 해양행정주관 부문이 하급 해양행정주관 부문을 감찰하는 것임
- 2017년 9월 기준 6개 국가해양전문감찰반이 랴오닝(辽宁), 허베이(河北), 장쑤(江苏), 푸젠(福建), 광시(广西), 하이난(海南) 등 5개 성(자치구)에서 해양감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해양감찰의 주체는 전문적으로 해양감찰에 종사하는 기관 및 개인이며,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양감찰원임
  - 국무원은 해양감찰에 대한 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해양행정주관 부문이 국무원을 대표하여 해양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가해양국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연해 성(구, 시) 정부 및 그 해양주관 부문, 그리고 해양집행기관 등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가 해양감찰제도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해양감찰 업무 시스템을 구축
  - 해양감찰원은 해양감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자로 국가해양국은 해양감찰원의 시험, 교육, 심사 및 징벌 등 관리업무에 대해 책임
- 감찰의 대상은 해양감찰기관의 감찰을 받는 관련 정부 부문 및 개인이 됨

- 연해 성(구, 시) 정부, 설정된 지역의 시 정부 및 그 해양주관 부문 그리고 해양 집행기관
  - 한편, 해역 및 섬의 자원 관리 및 해양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책임은 주로 지방의 각 급 정부 주관 부문 및 해양 관련 집행기관이 담당하므로 실제로는 해양행정관리인 및 집행원 또한 해양감찰 대상이 됨
- 해양감찰의 내용은 해역 및 섬의 사용관리, 해양환경보호, 해양관련 법집행 등이 포함됨
    - 해양감찰업무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양감찰의 주요내용은 1) 법률법규 및 규장과 규범성문건의 집행, 2) 해양전략정책 및 계획계획의 실시, 3)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징수 및 행정위탁 등 행정행위의 실시, 4) 중대 행정결정의 절차 규범, 5) 행정행위와 관련된 공청 및 정부정보공개의 실시, 6) 행정재심, 소송안건의 처리 및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성 사안의 처리, 7) 행정법집행 책임제의 실시 및 집행관의 집행자격 및 자질 기록 등<sup>11)</sup>

### 3. 황해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 1) 한중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현황

- 한중 양국은 1993년 10월 28일 《한중환경협력협정》 체결<sup>12)</sup>
  -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황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폐수의 황해 유입 등으로 중국과의 환경협력 없이 국내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sup>13)</sup>

11) 蔡先风·童梦琪(2018), pp.118-119.

12) 협정의 명칭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발효일은 1993년 11월 27일임.

13) “한-중환경협력협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1990년대 들어 중국 또한 환경 보호 정책을 수정 보완을 통해 현실화하는 등 환경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이 환경협력할 것을 합의
  - 협력 분야: 1)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규제, 2)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 및 수질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규제, 3) 연안 및 해양 오염규제, 4) 농업배수 및 농약규제, 5)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자원회수, 유해 고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규제, 6) 유독 화학물질의 관리, 소음저감, 생물 다양성 보존,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 등(제6조)
  - 한중환경협력협정은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제4조)
- 이를 바탕으로 1994년 이래 2018년까지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sup>14)</sup>
- 1994년 한국과학기술처와 중국국가해양국이 《한중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체결
  - 한중 양국이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시작
  - 이를 바탕으로 한중해양과학기술 공동협력을 위한 기본플랫폼인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칭다오(靑島)에 설립
- 현재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황해 냉수대 생태계 공동연구, 황해 핵안전 모니터링·예측 등에 관한 협력연구가 진행 중이고, 심해저 광물 자원개발연구, 남북극 협력연구, 황해 해양 예측·예보 등에 관한 협력연구가 진행되고 있음<sup>15)</sup>

14) “한중, 내달23-24일 잇따라 환경회의.....미세먼지 중점논의”, 연합뉴스, 2018-12-23.

15) 정희수(2012), p.87.;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홈페이지 참고.

## 2) 황해환경관리 협력 거버넌스 구축

- 황해를 한중 양국의 공동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용과 개발, 생태자원의 보호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한중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한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 활용
  - 위원회를 활용하여 황해 환경관리를 위한 최고의결기구 구성
  - 양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에서 황해 이용 및 개발, 생태 보호에 관한 과제와 목표를 수립
  - 황해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책임 범위, 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총량 제한 기준 등 중요사안 결정
- 또한 실무그룹을 조직하여 황해 환경관리 분야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정보 공유

## 3) 물관리에 대한 한중기본지침 구축

- 양국 간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을 통해 육지에서 기인한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국의 물에 대한 공동 기본관리지침 제정이 필요
- 관리지침에 물의 관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양국의 협력 관리를 위한 비전과 장기적이고 단계적 협력 관리 계획 수립
- 이와 더불어 관리지침의 이행에 관한 상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메커니즘 및 기준 구축이 요구됨
-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

## 4. 종합 및 함의

- 중국은 해양보호관련 전문 단행법률로 『해양환경보호법』을 마련하고 육지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총량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관리시스템을 개혁하여 해양영역에서도 생태보호한계선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오염유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벌에 따른 벌금상한선제도를 폐지하고 오염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며, 해양환경보호법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중국의 해양환경보호 제도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데, 예를 들면 환경관리해역을 지정하고 특별관리해역 및 중점해역에 대해서 오염물배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한편, 한국과 중국은 한중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매년 환경협력을 위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해양분야에서는 해양관련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칭다오에 설립하기도 함
- 환경분야에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황해환경협력을 위해 협력 거버넌스나 물관리 기본지침 등을 구축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 양국이 근접해 있는 해역의 해양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중국의 황해협력 프로젝트는 단순히 황해의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일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정희수(2012),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현황 및 제언: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정책』, 제22권 제2호.
- 한국은행(2017),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 『국제경제리뷰』, 제2017-32호.
- “태안 기름유출 피해 기름제거까지 7년 걸려... “생태계 회복 중””, 뉴시스, 2018-06-2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0\\_000034199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0_0000341994)(검색일: 2018-12-31).
- “중 보하이만서 또 기름유출사고”, 조선일보, 2012-06-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6/201206060001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6/2012060600019.html)(검색일: 2018-12-31).
- “한중, 내달 23-24일 잇따라 환경 회의... 미세먼지 중점논의”, 연합뉴스, 2018-12-23,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158800004?input=1195m>(검색일: 2019-01-03).
- “한-중환경협력협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62>(검색일: 2019-01-03).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http://www.ckjorc.org/ka/kaindex\\_mainpage.do](http://www.ckjorc.org/ka/kaindex_mainpage.do)(검색일: 2019-01-03)
- 白佳玉·隋佳欣(2018), “海洋生态保护的法治要求: 海环法修订视角下的市政解读”,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s』第20卷第3期.
- 蔡先风·童梦琪(2018), “国家海洋督察制度的实效及完善”, 宁波大学学报(人文科学版), 第31卷第5期.
- 黄华梅 外(2017), “基于资源环境承载力理论的海洋生态红线制度体系构建”, 『生态经济』, 第33卷第期.
- “详解《2017年中国海洋生态环境状况公报》”, 中国海洋报, 2018-04-03, <http://www.oceanol.com/keji/201804/03/c75726.html>(검색일: 2019-01-03).